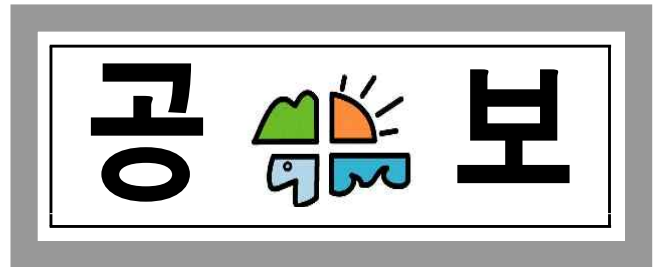


속 초 시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선 람	기 관 의 장



제1170호 2018년 10월 26일(금)

공 고

- 속초시 관학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입법예고 2
- 속초시 관학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폐지규칙안 입법예고 5
- 건축허가(신고) 시 지정하는 도로 지정 공고 8
- 속초시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입법예고 10
- 건축허가(신고)시 지정하는 도로 지정 공고 12
- 속초시 민원상담인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4

속초시 관학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입법예고

「속초시 관학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폐지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속초시 법무행정사무처리규칙」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0월 22일

속 초 시 장

1. 자치법규명 : 속초시 관학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2. 폐지이유

관내 대학교의 모든 학과가 타 지역으로 이전되어 지역대학과의 상호 교류와 협력을 통한 행정경쟁력을 높이고자 설치된 관학협의회 구성 및 운영이 사실상 유명무실한 상태임에 따라, 협의회 운영에 관한 규정을 폐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속초시 관학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폐지함.

4. 폐지조례안 : 붙임

5. 의견제출

가. 이 폐지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1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속초시장(참조 : 기획감사실)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찬·반대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법인·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나. 의견제출 장소 및 문의처

- 주 소 : 우)24826 강원도 속초시 중앙로 183
/ 속초시청 기획감사실 (기획협력평가팀)
- 연락처 : 033-639-2122(FAX 033-639-2106)

다.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FAX, 직접방문 등

6. 기 타

기타 자세한 사항은 속초시청 기획감사실 기획협력평가팀(033-639-2122)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속초시 관학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속초시 관학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폐지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속초시 관학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폐지규칙안 입법예고

「속초시 관학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폐지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속초시 법무행정사무처리규칙」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0월 22일

속 초 시 장

1. 자치법규명 : 속초시 관학협의회 설치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2. 폐지이유

관내 대학교의 모든 학과가 타 지역으로 이전되어 지역대학과의 상호 교류와 협력을 통한 행정경쟁력을 높이하고자 설치된 관학협의회 구성 및 운영이 사실상 유명무실한 상태임에 따라, 협의회 운영에 관한 규정을 폐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속초시 관학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폐지함.

4. 폐지규칙안 : 붙임

5. 의견제출

가. 이 폐지 시행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1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속초시장(참조 : 기획감사실)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찬·반대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법인·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나. 의견제출 장소 및 문의처

- 주 소 : 우)24826 강원도 속초시 중앙로 183 / 속초시청 기획감사실 (기획협력평가팀)
- 연락처 : 033-639-2122(FAX 033-639-2106)

다.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FAX, 직접방문 등

6. 기 타

기타 자세한 사항은 속초시청 기획감사실 기획협력평가팀(033-639-2122)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속초시관학협의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시행규칙

폐지규칙안

속초시관학협의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시행규칙을 폐지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건축허가(신고) 시 지정하는 도로 지정 공고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 나목 규정에 따라 건축허가(신고) 시 그 위치를 지정하는 도로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지정 공고 합니다.

2018년 10월 26일

속 초 시 장

가. 공 고 명 : 건축허가(신고) 시 지정하는 도로 지정 공고

나. 도로위치 : 도로지정 조서 참조

다. 공고기간 : 2018. 10. 26. ~ 11. 16. (21일간)

라. 도로지정 조서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건축위치 건축물 용도 건축허가번호 (건축신고 수리일)	비고
			공부 면적	지정 면적			
강원도 속초시 도문동	889	대	1,015 (당초) 506 (분할)	78 (당초) 42 (변경)	김창선	속초시 도문동 889번지 단독주택 2018-건축디자인과 -건축신고-제18호 (신고사항변경 : 2018. 10. 2.)	건축주 : 김창선

마. 공고방법 : 전국 지방자치단체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판

바. 관계도서 : 속초시청 건축디자인과 비치(열람가능)

사. 문의사항 : 건축디자인과 건축행정팀(033-639-2256)

속초시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입법예고

속초시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폐지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행정상 입법예고) 및 「속초시 법무행정사무처리 규칙」 제19조(입법예고 대상)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0월 25일

속 초 시 장

1. 자치법규명 : 속초시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2. 폐지이유

장사시설 공설봉안묘 조성에 따른 지역주민 보상차원에서 제정된 기금 지원사업이 종료됨에 따라 조례를 폐지하여 장사시설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속초시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

4. 폐지조례안 : 붙임

5. 의견제출

가. 이 폐지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18년 11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속초시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명) 주소·전화번호
- 3) 기타 참고사항 등

다. 의견 제출할 곳 : 우24826/ 속초시 중앙로 183 속초시청

여성가족과 노인복지팀(전화: 033-639-2951, FAX: 033-639-2739)

라. 의견제출 방법: 서면, 전화, FAX, 시 홈페이지, 직접방문 등

6. 기타

기타 자세한 사항은 속초시청 여성가족과 노인복지팀(033-639-2951)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속초시 조례 제 호

속초시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속초시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폐지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건축허가(신고)시 지정하는 도로 지정 공고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 나목 규정에 의하여 건축허가(신고)시 그 위치를 지정하는 도로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지정·공고 합니다.

2018년 10월 25일

속 초 시 장

1. 공 고 명 : 건축허가에 따른 도로지정
2. 도로위치 : 도로지정 조서 참조
3. 공고기간 : 2018. 10. 26.~ 11. 09.(14일)
4. 도로지정 조서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건축위치 건축물 용도 허가(신고)번호 (건축허가일) 장사동 371번지 단독주택 2018-건축디자인과-신축허가-119 : 안봉기 (2018.10.25)	비고
			공부 면적	지정 면적			
속초시 장사동	371 번지	대	2,404	200	안봉기		건축주 : 안봉기

5. 공고방법 : 전국 지방자치단체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판
6. 관계도서 : 속초시 건축디자인과 비치(열람가능)
7. 문의사항 : 속초시 건축디자인과 건축행정팀(033-639-2769)

위치도 및 현황도

- 위치도 및 현황도를 작성합니다.



위치도

축척

NONE



현황도

축척

NONE

속초시 민원상담인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속초시 민원상담인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속초시 법무행정 사무처리 규칙」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8년 10월 25일

속 초 시 장

1. 자치법규명 : 「속초시 민원상담인 운영에 관한 조례」
2. 제정이유 : 최근 건설경기 활성화로 인하여 각종 인허가와 관련된 복합고충 민원이 증가함에 따라 시민들의 불편함을 듣고 소통할 수 있는 민원상담인 제도를 도입하여 시민과 함께 공감하는 민원행정을 구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속초시에 주소를 두고 행정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중에서 민원상담인을 위촉하고자 함.(안 제2조)
 - 나. 민원상담인으로 위촉할 수 없는 사람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3조)

- 다. 민원상담인의 임기를 1년으로 하되, 연임 할 수 있도록 규정함. (안 제4조)
- 라. 민원상담인의 직무와 근무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자 함.(안 제5~6조)
- 마. 민원상담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나 그 밖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8조)

4. 자치법규안 : 붙임

5. 의견제출

가.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 11.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속초시장(참조 : 민원봉사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찬·반대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의 성명 (법인·단체의 경우 법인·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나. 의견제출 장소 및 문의처

- 주 소 : 우)24826 강원도 속초시 중앙로 183
속초시청 민원봉사과 (민원행정팀)
- 연락처 : 033-639-2720 (FAX 033-639-2385)

다.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FAX, 직접방문 등

6. 기 타

기타 자세한 사항은 속초시청 민원봉사과 민원행정담당(033-639-272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속초시 민원상담인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4항에 따라 민원상담인을 위촉하여 시청을 방문하는 민원인에 대한 안내와 상담을 함으로써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함에 그 목적이 있다.

제2조(민원상담인의 자격) 민원상담인(이하 “상담인”이라 한다)은 행정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속초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여야 한다.

제3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은 상담인으로 위촉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원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7. 그 밖에 도덕적으로 흠이 있는 사람

제4조(임기) 상담인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5조(직무 등) 상담인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민원에 대한 상담과 안내
2. 고충·복합민원 처리지원 및 관련부서 협의
3. 각종 행정정보 제공 및 시책 등 홍보

제6조(근무) ① 상담인의 근무시간은 공무원 근무시간으로 하며, 필요에 따라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상담인은 종합민원실에 상주근무하고,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민원상담 일지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③ 상담인은 민원 상담과정이나 직무수행 중 알게 된 사실을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조(위촉 해제) 상담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심신의 장애로 업무수행을 감당할 수 없을 때
2. 직무를 태만히 하거나 제6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한 때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제8조(상담인의 대우) 상담인은 명예직으로 하되, 예산의 범위에서 직무 수행에 필요한 여비나 그 밖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민원상담일지

년 월 일 요일

결재	상담인	과 장

민원인적사항						
성명			연락처			
주소						
분야별 상담건수 (금일 / 누계)						
합계	녹지환경	건설도시	인·허가	토지지적	생활민원	기타
주요민원 상담내용						
처리경위 및 경과 (특이사항)						
건의사항						
관련부서						

관 련 법 령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약칭: 민원처리법)

제9조(민원실) ④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인에 대한 안내와 상담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행정실무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을 민원상담인으로 위촉할 수 있다. 이 경우 민원상담인은 명예직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